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2007. 11. .

제 출 자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을 전면 개정하면서 목적, 위치, 기능, 위원회 등 7개 조항이 2007. 4. 26 기 제정된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있어 중복된 내용 일부를 삭제 및 수정코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음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 도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 및 제3조와 안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
- 안 제4조 내지 제12조를 안 제2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안 제17조 및 제18조를 안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안 제8조중 “제6조” 를 “제4조” 로 한다.

3. 참고사항

- 「평생교육법」
-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 도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및 제3조와 안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4조 내지 제12조를 안 제2조 내지 제10조로 하고,
안 제17조 및 제18조를 안 제11조 및 제12조로 하며,
안 제8조중 “제6조” 를 “제4조”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u>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미시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1조(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u>제2조(위치) 평생교육원은 구미시 관할 구역 내에 둔다.</u>	<u><삭 제></u>
<u>제3조(기능) 평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u> <u>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u> <u>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u> <u>3. 평생교육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구축 및 지원</u> <u>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u> <u>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지원</u> <u>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u> <u>7.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u> <u>8. 기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	<u><삭 제></u>
<u>제4조(수강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대상자는 구미시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미시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구미시 관내 직장의 재직자도 수강할 수 있다.</u>	<u>제2조(수강자격)<개정안과 같음></u>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수강료) ①시장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강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수강료)<개정안과 같음>
제6조(시설의 사용허가) 평생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개정안과 같음>
제7조(시설의 이용범위) 평생교육원 시설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시설의 이용범위)<개정안과 같음>
제8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4. 기타 평생교육원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사용의 제한)<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용료) 제6조에 의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제4조에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시의 직접 사용 또는 공익,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개정안과 같음>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개정안과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평생 교육원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변경신청 을 하여 시장이 허가 취소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운영위원회 구성) ①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구미시평생교육원운영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평생교육원장이 되고, 부위원 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급 이상의 공 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삭 제>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u>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u> <u>1. 평생교육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u> <u>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 책정에 관한 사항</u> <u>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모집 선발에 관한 사항</u> <u>5. 기타 평생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u>	<u><삭 제></u>
<u>제15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u> <u>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삭 제></u>
<u>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삭 제></u>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위탁 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생교육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운영)<개정안과 같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개정안과 같음>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평생교육원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의 확대와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강자격)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대상자는 구미시민을 우선으로 하며, 구미시 관내 학교의 재학생과 구미시 관내 직장의 재직자도 수강할 수 있다.

제3조(수강료) ①시장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강료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설의 사용허가) 평생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시설의 이용범위) 평생교육원 시설의 이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
4. 기타 평생교육원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기타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제4조에 의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시의 직접 사용 또는 공익,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평생교육원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시장이 허가 취소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탁 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생교육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대학,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구미시평생교육원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제8조 관련)

(단위 : 원)

시설구분		사용기준	기본사용료	비 고
기본 시설	대강당	평일주간 1회 (4시간이내)	60,000원	•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가산한다. • 토요일, 공휴일은 평일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 야간은 주간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회의실	〃	30,000원	
	강의실	〃	30,000원	
부대 시설	냉 · 난방 (대강당)	• 냉방 1회 (4시간이내) • 난방 1회 (4시간이내)	40,000원	•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한다.
	냉 · 난방 (회의실 · 강의실)	• 냉방 1회 (4시간이내) • 난방 1회 (4시간이내)	30,000원	• 4시간이상 초과시 매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한다.